

시민교육의 실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민형배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480
----------	-------

발의연월일 : 2025. 10. 2.

발 의 자 : 민형배 · 안도걸 · 조계원

김문수 · 이개호 · 최혁진

문정복 · 정준호 · 박지원

김우영 · 양부남 의원

(11인)

제안이유

시민교육의 법적 기반을 마련해 건전한 시민문화 정착과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시민 주도로 정치와 경제 발전을 이뤄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계층, 지역, 세대 간 다양한 갈등이 남아 있으며, 이는 민주주의의 성숙과 사회통합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러 영역의 시민교육 주체들이 갈등을 완화하고 바람직한 시민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하지만 활동이 체계적이지 못하고, 인적·물적 자원의 활용도 미흡해 효과가 제한적인 형편입니다. 따라서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가운데, 시민교육을 사회 각 분야에서 적극 장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시민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지원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사회 전반에서 시민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건전한 시민문화가 조성되기를 기대합니다. 나아가 갈등과 대립을 해소하며, 민주주의의 한 단계 더 발전에 이바지할 것입니다.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시민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이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과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시민교육은 사회 각 영역에서 장려되도록 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며, 시민교육단체와 국민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보장하도록 함(안 제3조).

다. 시민교육 기본계획을 포함하여 시민교육의 실시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시민교육위원회를 두고,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하는 사람과 학계·법조계·언론인단체·시민교육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 등으로 위원을 구성하도록 함(안 제6조).

라. 시민교육의 실시 및 지원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시민교육위원회에 시민교육원을 두도록 함(안 제7조).

마. 지역에서의 시민교육 실시와 지원을 위하여 시민교육위원회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시·도시민교육센터

를, 자치구·시·군에 구·시·군시민교육센터를 각각 둘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바. 시민교육의 체계적 실시 및 지원을 위하여 5년 단위로 시민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에 실시·지원할 시민교육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10조 및 제11조).

사. 국가는 시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시민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민교육단체에 보조하거나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아. 개인 또는 법인·단체는 시민교육단체를 지정하여 시민교육위원회에 금품을 기탁할 수 있도록 하고, 시민교육위원회는 기탁받은 금품을 해당 시민교육단체에 교부하도록 하며, 금품을 기탁한 자 또는 기탁된 금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를 하도록 함(안 제15조).

자. 시민교육위원회는 시·도시민교육센터 또는 구·시·군시민교육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의 시민교육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도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해당 지역에 대한 시·도시민교육센터 또는 구·시·군시민교육센터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민형배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의안번호 제13482호)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47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시민교육의 실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시민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이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과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민교육”이란 모든 국민이 민주주의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합리적으로 사고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자질과 역량을 함양하는 교육과 제반 활동을 말한다.
2. “시민교육단체”란 시민교육을 실시하거나 시민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기관·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시민교육은 사회 각 영역에서 장려되어야 하며, 장기적 차원에서 계획되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② 시민교육은 정치적 중립성을 바탕으로 하여야 하며, 특정 개인·단체·정당 또는 정치적 세력의 이익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실시되어서는 아니 된다.

③ 시민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시민교육단체와 국민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제4조(교육내용) 시민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와 민주적 정치제도에 관한 사항
2. 시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3. 민주적 토론 방식 및 합리적 의사 결정 절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민의식 함양 및 정치참여 제고에 관한 사항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시민교육의 실시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시민교육 실시 및 지원기구

제6조(시민교육위원회) ① 시민교육의 실시와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시민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직무에 관하여 독립의 지위를 가진다.

1. 제10조에 따른 시민교육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시민교육단체의 시민교육 지원 및 전문인력 육성에 관한 사항
3. 시민교육의 발전을 위한 연구·교육 콘텐츠 개발에 관한 사항
4. 국내외 시민교육단체 등과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민교육의 실시와 지원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정당이 추천한 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하는 각 1명과 학계, 법조계, 언론인단체, 시민교육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회를 구성한 후에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의 수가 증가하여 위원정수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현원을 위원정수로 본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시민교육 관련 분야 연구업적이 있는 사람

2. 시민교육단체에서 시민교육 활동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정당의 당원이거나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로 등록한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으며, 재임 중인 위원이 이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⑤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⑥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수당과 실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⑦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시민교육원) ① 시민교육의 실시 및 지원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고, 그 밖에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을 정책 집행에 반영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시민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교육원에는 원장 1명을 두며,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임명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시민교육 관련 분야 연구업적이 있는 사람

2. 시민교육단체에서 시민교육 활동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원장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④ 교육원의 조직, 직무범위 및 공무원의 정원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감독위원회) ① 시민교육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과 교육원이 수행하는 업무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감독위원회를 둔다.

② 감독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정당이 추천한 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감독위원회의 위원은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하는 각 1명을 포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위촉한다.

④ 감독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⑤ 감독위원회의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수당과 실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⑥ 감독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시민교육센터) ① 위원회는 지역에서의 시민교육 실시와 지원을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시·도시민교육센터를, 자치구·시·군에 구·시·군시민교육센터를 각각 둘 수 있다.

② 시·도시민교육센터와 구·시·군시민교육센터의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할지역에서의 시민교육 실시 및 지원에 관한 사무
2. 관할지역 내 시민교육단체와의 협업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무
3. 그 밖에 교육원이 위임하는 사무

③ 시·도시민교육센터와 구·시·군시민교육센터의 설치·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3장 시민교육에 관한 계획 수립 등

제10조(시민교육 기본계획) ① 위원회는 시민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시민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민교육의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2. 시민교육 관련 사업의 지원 및 전문인력 육성에 관한 사항
3. 시민교육 관련 연구·교육 콘텐츠 개발에 관한 사항
4. 시민교육단체 등과의 협업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시민교육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민교육의 실시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시민교육 시행계획 등) ① 교육원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의 시민교육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행계획에는 기본계획에 포함된 각종 사업의 세부적인 추진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교육원은 매년 2월 말일까지 전년도 시행계획의 이행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계획 등의 공개) 위원회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및 그 이행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

개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13조(중앙행정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 ① 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거나 그 밖에 시민교육의 실시와 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단체 등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기관·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거나 그 밖에 시민교육의 실시와 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 업무의 대상과 내용 등이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등과 관련된 경우에는 사전에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4조(국가 등의 지원) ① 국가는 시민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민교육의 실시 및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시민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민교육단체에 보조하거나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시민교육단체에 대한 금품 기탁 등) ① 시민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재정지원을 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는 하나 또는 복수의 시민교육단체를 지정하여 위원회에 금품을 기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사용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탁된 금품을 접수한 위원회는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지정된 시민교육단체에 그 금품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금품을 교부받은 시민교육단체는 이를 별도의 계정을 설치하여 구분·경리하여야 하며, 금품을 교부받은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그 수입과 지출내역을 기재한 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수입과 지출내역에 관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회계장부 및 그 밖의 출납서류를 확인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를 받은 시민교육단체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시민교육의 발전을 위한 금품을 기탁한 자 또는 그 금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금품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소득세 및 증여세를 면제하되, 개인이 기부한 기부금은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에서 10만원까지는 그 기부금액의 110분의 100을,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의 100분의 15(해당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그 공제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추가로 공제한다.

제16조(권한 및 사무의 위탁) ① 위원회는 제9조에 따른 시·도시민교육센터 또는 구·시·군시민교육센터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의 시민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해당 지역에 대한 시·도시민교육센터 또는 구·시·군시민교육센터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의 범위·절차와 해당 사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교부·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등 설치에 관한 준비행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이 법 시행 전에 제6조에 따른 시민교육위원회 및 제8조에 따른 감독위원회의 구성·운영과 제7조에 따른 시민교육원의 설치에 관하

여 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